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8.

발 의 자 : 이건태 · 이성윤 · 정준호
이수진 · 조인철 · 위성곤
진선미 · 김교홍 · 문진석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·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, 열차·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, 침수,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(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철도안전 종합계획) ① (생략)	제5조(철도안전 종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9.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</u>
<u>9.</u> (생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